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 유입차단을 위한 검역 현황

< 추진배경 >

- '85년 영국의 소에서 최초로 광우병(BSE)이 발견된 이후 프랑스('91), 네덜란드('97), 독일('00), 체코·그리스·슬로바키아('01) 및 일본('01.9)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 미국, 호주등에서 EU(15개국)와 EU주변국(15개국) 및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과 동물성 단백질제품의 수입을 전면금지 하고 있음
-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안전 축산물 공급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동 질병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필요

I. 현황

1. 각국의 광우병 발생동향

- '85 영국에서 최초로 발생된 광우병은 현재 구주연합국가 15개국 중 12개국을 비롯하여 유럽내 16개국과 일본에서 발생

< 광우병 발생국 현황 >

(단위:두)

국가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이태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체코	그리스	슬로바키아	일본
발생두수	181,524	748	605	443	53	21	70	1	6	126	33	391	2	1	1	1	1

* '86~'01.10월 : OIE자료

-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는 카나다('93.11, 1두)·포클랜드제도('89, 1두)·오만('89, 2두) 등 3개 국가임

2. 광우병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규정

- 광우병 비발생 또는 발생국의 분류요건 5가지(세부내용 별첨)
 - ① Category I : 비발생국 또는 지역(Country or region free of BSE)
 - ② Category II : 자생적 발생건이 보고된 적이 없는 잠정 비발생국 또는 지역
 - ③ Category III : 자생적 발생이 1건이상 보고된 적이 있는 잠정적 비발생국 또는 지역
 - ④ Category IV : 저발생국 또는 지역
 - ⑤ Category V : 고발생국 또는 지역
- 광우병과 관련없는 제품으로 설정한 품목(6개)

- 우유 및 유제품(Milk and milk products)
- 정액(semen)
- 단백질제거우지(불용성 불순물 최대허용기준은 중량기준(0.15%) 및 이러한 우지로 만든 제품 (protein-free tallow))
- dicalcium phosphate(인산 칼슘염)
- 원피 (Hides and skins)
- 원피로부터 생산된 gelatin and collagen

OIE 광우병 병원체 사멸조건

(반추수 단백질을 포함하는 육골분 생산시 광우병 불활화조건)

- 원료는 열처리 이전에 입자크기가 50mm 이하로 되어야 함
- 원료는 포화증기 조건에서, 절대기압 3기압 하에서, 최소 133°C에서 20분 이상 열처리되어야 함

II. 광우병 발생 관련 주요국의 조치동향

구주연합국가(EU)

- 30개월 이상된 소에 대한 도살후, 뇌조직을 시료로 채취 조직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공매폐기
- 육골분 및 육분사료를 포함한 포유류 유래 단백질의 포유동물에게 급여금지('01.5.22)

※ '00.12.6 :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사육동물에 급여금지 조치
- 광우병 오염확산 가능성이 높은 SRM(Specified Risk Materials : 뇌, 눈, 척수 등)을 제거한 후 유통(EU위원회, '00.10.1시행)
 - 우유 및 유제품과 원피는 자유롭게 유통

미 국

- 영국산 반추수 등 수입금지('89.7)에 이어 조치를 확대하여 유럽 30개국산 동물성 단백질 (Rendered animal protein products)수입금지('00.12.07)
 - 영국산 모든 반추수 및 특정소산물 수입금지('89.07.21)
 - BSE 자연발생국산 반추수 육류 및 식용제품 수입금지('91.12.06)
 - 모든 유럽 국가(총30개국)산 반추수 및 반추수 생산물 금수('97.12.12)
 - 유럽산 모든 사료용 동물단백질(rendered animal protein products)수입금지('00.12.07)
 - 오만('01.1월), 안도라 · 산마리노 · 모나코('01.6.1)산 반추수, 반추수 유래 육류, 육제품 및 기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01.9.18)
 - '01.9.10일 이후 도착분부터 제한조치 적용

일 본

- 영국(본토 및 북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96. 3)에 이어
 - 구주연합국가(EU) ·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17개국)산 쇠고기, 내장과 그 가공품, 소정액, 수정란, 동물성단백질제품(Rendered animal protein products) 수입금지('00.12.22, 농림수산성)
 - 소에서 유래한 원료의 의약품, 의료용구, 의약부외품, 화장품 제조시 사용금지 및 당해원료를 사용한 의약품등의 수입금지결정('00.12.12, 후생노동성)

□ 호 주

- EU15개국 및 EU주변15개국(총 30개국)산 쇠고기 함유식품 수입 잠정 중단조치('01.1.5)
 - 모든 국가(뉴질랜드 제외) 동물유래 사료 수입금지('66년)
 - 영국 및 아일랜드 산 생우 수입금지('88.12월)
 - 프랑스, 스위스산 생우 수입금지('91년)
 - 반추수 유래 육골분을 반추수에 급여금지('97)
 - 모든 포유류 유래 물질을 반추수에 급여금지('99.12월)
- 일본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의 수입중단조치('01.9.24)

III. 우리나라의 조치사항

1.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조치 사항

□ 광우병 발생국산 소 및 쇠고기, 그 가공품(육골분 포함) 수입금지

- 영국('96.3.22), 화란('97.3.26), 아일랜드('98.1.10), 덴마크('00.12.4)산 소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
- 프랑스산 자비육 수입위생조건 폐지('00.12.5)
 - 위생조건 제정후, 수출작업장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곳이 없어 수입사실 없음

□ 광우병 관련 수입금지 대상을 발생국 인접국가 및 반추동물로 확대

- EU국가(15개국)중 광우병 비발생국인 페르시아 · 스웨덴을 포함한 전 EU국산 소 · 면양 · 산양 등 반추동물과 그 육류 · 내장과 육류가공품 · 소정액 · 소 수정란 · 난자 잠정 수입금지 ('00.12.30)
 - 모든 동물성 단백질(Rendering Animal protein products)까지도 금지('01.1.6)
 - 원피와 우유 및 유제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 EU 주변국가인 헝가리, 스위스, 루마니아 등 15개국산 소, 산양, 면양 등 반추 동물 및 그 육류, 내장과 육류가공품, 소정액, 소 수정란, 난자 잠정 수입 금지('01.1.17)
 - 모든 동물성 단백질(Rendering Animal protein products)까지도 금수
 - 원피와 우유 및 유제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

□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축산물 수입금지('01.9.22)

- 일본의 광우병 의심소 발생발표와 동시에 일본 광우병관련 품목에 대해 잠정수입검역중단 조치('9.10)
- 일본 광우병 최종확정 발표('9.22)를 공식 확인후 광우병관련 품목의 잠정수입검역중단을 수입 금지로 전환

□ 브라질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 잠정수입검역중단(2.4)조치 해제(2.27)

- 미국, 카나다는 현지조사 후 2.23일자로 금지조치 해제
 - '96년부터 반추가축 유래 육골분 사료를 반추가축에게 급여금지
 - '90년부터 '00년까지 소 2,094두의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 등

□ 유럽(30개국) 및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과 동물성단백질 제품의 제3국 경유 반입 감시 · 감독 철저

- 미국 · 카나다 · 호주 및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위생조건 준수여부 확인

- 유럽30개국과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에서 유래되지 않았다는 증명서 첨부제도 시행
- 제도개선 등을 통한 광우병 관련품목에 대한 관리강화
 - 광우병 관련제품에 대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원고시 제2001-7호)고시
 - 멸균처리 기준을 강화하여 지정검역물의 범위 확대
 - 현행조건(121°C 15~20분 또는 115°C 35분)을 국제기준(OIE)에 의한 불활화조건(133°C 3기압에서 20분)으로 상향조정
 - 식약청, 관세청등과 협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광우병 관련품목 680개(HS code)를 선정하고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하여 소관부처에서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

<광우병관련 조치사항 한·일 비교 >

구 분	한 국	일 본	비 고
스크래피 발생	발생하지 않음	최근 '99년에도 발생한 바 있음	면양의 Scrapie는 BSE의 원인으로 알려짐
EU산 사료용 육골분 수입	가축사료용으로 수입하지 않았음	'96년 전후 EU에서 일부 수입되었다고 보도됨(서일본신문)	1000°C 이상 처리 공업용 골회와 식용골분은 수입된 적 있음
EU산 쇠고기 수입	발생국산은 전면 수입 금지	작년까지 SRM을 제거한 쇠고기는 수입	SRM: 특정위험부위
수입금지 대상국가	유럽 30개국	유럽 17개국	
소 광우병 검사	3,043두(사육:2,038천두)	1,210두(사육:4,530천두)	'96~'00년 실적

2. 국내 조치사항

- 국내 사육 소를 대상으로 한 광우병 검사 실시
 - '96~'00년(5년간) OIE 검사기준(99두/2세이상 소 100만두)보다 많은 3,043두를 포함하여 현재 ('01.10월) 3,867두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
- 소·양등 반추동물에 육골분 및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금지 조치 및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소 광우병검사 실시
 - 육골분, 육분을 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금지('00.12.1)
 - 남은 음식물사료 반추동물에 사용금지('01.1.31)
 -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소 광우병 정밀검사 결과 : 3두 및 태반 7두(전두수 음성)

<사료관리법 개정 : '01.3.28공포>

☞ 육골분등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광우병 국내발생에 대비한 BSE방역프로그램(SOP) 개발추진
 - 광우병 발생시 대응방안, 검사방법, 방역조치 등 긴급행동방역지침(SOP) 마련을 위한 초안 제

출(농림부)

- 광우병관련 대국민 홍보실시
 - 홍보비디오 및 홍보지 제작·배포
 - 생산자 단체 및 시·도에 홍보비디오 배포('96.12)
 - 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 소비자 보호단체 및 각 수의과대학에 홍보지 배포('01.1.10)
 - 국제심포지움 개최
 - 한국수의병리학회주관으로 광우병 개요 및 정부 방역대책 홍보('97.6.27)
 - 프랑스 광우병 발생현황등에 대한 해외 광우병전문가 세미나 개최('00.12)
 - 한국 국제축산박람회시 검역원 홍보관 설치 및 홍보 ('99.10)
 - TV방송을 통한 광우병 및 크로즈펠트야콥병 홍보(2000년 4회)
 - K-TV방송을 통한 광우병관련 국내외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등 홍보('01.2.29)
 - 취재파일 4321(KBS)을 통한 광우병관련 홍보('01.2.11)
 - 농촌진흥청등 5개기관에 대한 교육실시('01.2.9~2.15)

IV. 광우병 유입방지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

- 광우병 발생국 및 그 주변국가로부터 광우병 관련제품 수입금지 유지
 - 유럽30개국 및 일본으로부터 반추동물 및 그생산물과 동물성단백질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지속유지
 - 양어용 함유사료 및 공업용 골회 수입검역중단 조치 해제('01.3.15)
 - 어분전문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수입검역중단조치 해제('01.5.14)
- 휴대품 검색강화 등 공·항만 검역강화
 - 공항만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공항만 검역강화
 - 세관과 연계하여 여행객 및 승무원의 휴대품 검색(X-ray)철저
 - 해양경찰서와의 공조체제하에 취약지역등 밀수단속 강화
※ 불법휴대축산물 검색을 위한 탐색견 운영 추진
 - 불법휴대축산물 반입자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고발 철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공항만 여행객 등에 대한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홍보캠페인 지속 실시
 -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매월 실시중인 공항만 홍보캠페인과 병행실시
 - 유럽 및 일본왕래 항공기와 선박의 남은 음식물류 안전처리 감독강화
- 유럽 및 일본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의 3국 경유 반입감시 감독 철저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위생조건 준수여부 확인
 - 검역증명서 및 현물대조를 통한 원산지 확인 등 현물검사 및 역학조사 철저
- 광우병관련 수입위생조건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우제류 동·축산물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원피, 돼지, 돼지고기 등 품목별로 분리추진하여 관련물품은 수입금지
 - 덴마크·스웨덴·아일랜드·영국 및 핀란드산 우제류동물 및 그생산물 수입위생조건

- 관련수입위생조건을 국별로 분리 추진하여 발생국 등은 수입금지
 -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 국별로 분리하여 광우병 발생국 등은 수입 금지
 - 소정액 및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 소 및 돼지정액에 대하여 국별로 분리하여 광우병 발생국등의 소정액은 수입금지
- 광우병관련 각국의 조치사항 신속 파악 대처
 - EU국가 및 EU외 국가 등에 대한 동향파악과 미국·캐나다·호주 등 광우병 비발생국의 예방조치내용 파악
 - 재외공관·한국주재외국공관 등을 통한 정보수집
 - 우유, 유제품 및 돼지의 광우병 연관성에 대한 외국정보수집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금수조치 여부 검토보고

참고 1)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이란

1. BSE란 ?

- 비정상적인 변형프라이온(PrP^{bse})이 이 병의 원인체로 추정됨
- 감염된 소의 뇌조직에 스폰지모양의 공포가 형성되어 홍분, 발작, 마비증상 등 특징적인 신경 증상을 보이는 질병임

2. BSE 전파경로는 ?

- 광우병은 비정상적인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함유된 동물 부산물을 먹음으로써 이를 프라이온 단백질이 뇌조직에 수년간 축적됨으로써 질병이 유발됨

3. 사람건강에 위험한가 ?

- 이 질병이 사람의 신종 야콥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관련성은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고 다만 역학적인 상황으로 추정할 뿐임
- 만약의 사태를 가정하여 사람건강에 위험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4. 어떤 증상이 있는가 ?

- 임상증상은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나야 나타남(평균3~5년 : OIE).
- 초기증상은 빛과 소리와 같은 조그만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홍분, 이상한 고함을 지르며 불안해 함, 또한 쇠약해지며 유량도 감소함.
- 말기증상은 후지마비 등 전신마비로 심화되어 결국은 죽게되는 치명적인 질병임

5. 어떻게 진단되는가 ?

- 광우병은 다른 질병의 원인체처럼 쉽게 분리되지 않으며 면역반응도 없는 질병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진단이 불가능함.
- 죽은 개체의 뇌조직을 채취하여 변형프라이온 단백질(PrP^{bse})의 존재여부를 검사함

6. 진단 프로그램은 ?

- 임상증상에 의한 광우병 의심축 도축
 - 조직병리학적 검사법(양측성 뇌회질 신경망 및 신경세포의 해면상변화)
 - 면역조직화학염색법 (PrP^{bse} 항원 검색)
또는 전자현미경검사(scrapie-associated fibrill(SAF) 확인)

참고 2)

BSE발생과 관련한 비발생 또는 발생국의 요건(5개 category)

구 분	인 정 요 건	비 고
BSE 비발 생국가 또 는 지역	<p>1) 제2.3.13.1조 1)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확인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 치가 적정기간동안 취해졌음을 증명하고</p> <p>2) 아래 a), b), c)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됨</p> <p>a) BSE의 발생이 없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제2.3.13.1조 2)에서 5)까지의 조건이 최소 7년간 준수되거나, ii) 제2.3.13.1조 3)의 BSE 유사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소에 대한 의무적인 신고 및 조사체계가 최소 7년간 준수되었고, 최소 8년간 육골분 혹은 굳기름 찌끼가 반추수에 급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p>b) 모든 BSE 발생건은 생우 또는 소수정란/난자의 수입에서 직접적으로 유래 한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고, 감염동물(암컷일 경우 임상증상이 발현한 시점 을 전후로 2년 기간내에 출생한 마지막 새끼까지 포함)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내에 살아 있는 경우, 이 동물들은 살처분되고 완전히 폐기되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제2.3.13.1조 2)에서 5)까지의 조건이 최소 7년간 준수되거나, ii) 제2.3.13.1조 3)의 기준이 최소 7년간 준수되었고, 최소 8년간 육골분 혹은 굳기름 찌끼가 반추수에 급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p>c) BSE의 마지막 자생적 발생이 과거 7년 이전에 있었으나, 제2.3.13.1조 2)에 서 5)까지의 조건이 최소 7년간 준수되었으며, 반추수에 대한 반추수유래 육골분 및 굳기름 찌끼의 급여가 금지되어 최소 8년간 효과적으로 시행되 어 온 경우</p>	
자생적 발 생건이 보 고된 적이 없는 BSE 잠정적 비 발 생 국 가 또는 지역	<p>1) 제2.3.13.1조 1)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확인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 치가 적정기간동안 취해졌음을 증명하고</p> <p>2) 아래 a) 혹은 b)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됨</p> <p>a) BSE의 발생이 없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제2.3.13.1조 2)에서 5)까지의 조건이 준수되었으나 7년간에는 미치지 못하거나, ii) 최소 8년간 육골분 혹은 굳기름 찌끼가 반추수에 급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으나 제2.3.13.1조 3)의 BSE 유사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소에 대한 의무적인 신고 및 조사체계에 대한 준수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 할 경우 <p>b) 모든 BSE 발생건은 생우 또는 소수정란/난자의 수입에서 직접적으로 유래 한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고, 감염동물(암컷일 경우 임상증상이 발현한 시점 을 전후로 2년 기간내에 출생한 마지막 새끼까지 포함)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내에 살아 있는 경우, 이 동물들은 살처분되고 완전히 폐기되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제2.3.13.1조 2)에서 5)까지의 조건이 준수되었으나 7년간에는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ii) 최소 8년간 육골분 혹은 굳기름 찌끼가 반추수에 급여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으나 제2.3.13.1조 3)의 BSE 유사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소에 대한 의무적인 신고 및 조사체계에 대한 준수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 할 경우 	

구 분	인 정 요 건	비고
1건 이상의 자생적 발생이 보고된 적이 있는 BSE 잠정적 비발생국 및 지역	<p>1) 제2.3.13.1조 1)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확인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적정기간동안 취해졌음을 증명하고</p> <p>2) 아래 a) 혹은 b)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BSE의 마지막 자생적 발생이 과거 7년 이전에 있었고, 제2.3.13.1조 2)에서 5)까지의 조건이 준수되며, 반추수에 대한 반추수유래 육골분 및 굳기름 찌끼의 급여금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제2.3.13.1조 2)에서 5)까지의 조건이 7년간 준수되지 못하거나, ii) 반추수에 대한 반추수유래 육골분 및 굳기름 찌끼의 급여금지가 8년간 이행되지 못한 경우 b) BSE의 마지막 자생적 발생이 과거 7년 이내에 보고되었으나, 자생적 발생 건에 근거하여 계산한 BSE 발생율이 해당국가 혹은 지역내의 24개월령 이상 소에서 12개월 간격으로 과거 연속 4회 1백만두당 1건 미만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반추수에 대한 반추수유래 육골분 및 굳기름 찌끼의 급여금지가 8년간 효과적으로 이행되었고, ii) 제2.3.13.1조 2)에서 5)까지의 조건이 최소 7년간 준수되었으며, iii) 감염소 뿐만 아니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컷일 경우 임상증상이 발현한 시점을 전후로 2년 기간내에 출생한 마지막 새끼까지 포함하고, - 감염동물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축군에서 출생하거나 출생이후 첫 1년간 감염동물과 같이 사육되어, 출생이후 첫 1년간 감염동물과 같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모든 소를 포함하여, 이러한 동물들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내에 살아 있는 경우, 살처분되고 완전히 폐기된 경우 	
BSE 저발생국가 또는 지역	<p>1) 제2.3.13.1조의 조건이 준수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지난 12개월에 근거하여 계산한 자생적 BSE 발생율이 24개월령 이상의 소 1백만두당 1~100두이거나,</p> <p>2) 제2.3.13.1조의 조건이 준수되고, 지난 12개월에 근거하여 계산한 자생적 BSE 발생율이 24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12개월 간격으로 과거 연속 4회 미만 1백만두당 1두 미만이고,</p> <p>3) 감염소 뿐만 아니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컷일 경우 임상증상이 발현한 시점을 전후로 2년 기간내에 출생한 마지막 새끼까지 포함하고 - 감염동물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축군에서 출생하거나 출생이후 첫 1년간 감염동물과 같이 사육되어, 출생이후 첫 1년간 감염동물과 같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동일한 사료를 섭취한 모든 소도 포함하여, 이들이 해당 국가 또는 지역내에 살아 있는 경우, 살처분되고 완전히 폐기된 경우 <p>지난 12개월에 근거하여 계산한 자생적 BSE 발생율이 24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1백만두당 1두 미만이지만, 제2.3.13.1조 1)에 따른 위험분석 결과 잠정적 비발생국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 혹은 지역은 BSE 저발생국가 또는 지역으로 간주된다</p> </p>	

구 분	인 정 요 건	비 고
BSE 고발 생국가 또 는 지역	<p>1) 제2.3.13.1조의 조건이 준수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지난 12개월간에 계산한 자생적 BSE 발생율이 24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1백만두당 100두를 초과하거나,</p> <p>2) 지난 12개월에 근거하여 계산한 자생적 BSE 발생율이 24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1백만두당 1~100두이지만 제2.3.13.1조 1)에서 5)까지의 조건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p>	

참고 3)

일본 광우병 발생 및 조치동향

< 발생상황 >

- 일본 농림수산성은 동경 인근 치바현에서 젊소(5세) 1두(북해도에서 입식)가 광우병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9.22)
 - 지난 9.10일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되어 영국 수의검사소에 검사를 의뢰(9.17)한 결과 광우병으로 최종확인

* 10.12 동경에서 광우병 의심소 1두는 음성으로 최종 발표됨(10.12)

<일본의 조치사항>

- 광우병 발생농장 동거축 46두 살처분, 병성감정실시(10.2)
- 북해도 원발농장에서 출하된 소(78두)의 유통경로 추적조사
 - 생존하였던 24두는 살처분하여 병성감정을 한 결과 이상없음. 나머지 54두는 도축된 것으로 확인됨(10.2)
- 광우병 발생축 처리 및 소 사료공장 조사실시(9.25)
 - 광우병 발생축은 육골분으로 가공되었으며 함께 가공된 210톤중 167톤은 회수하여 소각하였으나 43톤은 축산농가등에 출하된 것으로 확인됨
- 전국의 모든 소(약 453만두)의 사육농가(약 14만호)에 대하여 임상조사(출입검사)실시
 - 96년부터 동물성단백질사료를 반추가축에 급여하지 말도록 하였으나 22개 도현에서 214개 농가가 육골분을 소에 급여한 것으로 확인됨(10.9)
- 모든 국가로부터 육골분등의 수입 일시정지, 국내산을 함유한 사료용·비료용 육골분 및 육골분을 함유한 사료·비료의 제조와 판매의 일시정지(10.4시행) 및 일부해제(11.1)
 - 비료용과 Petfood용으로 돼지, 닭에서 유래한 것 및 이와 구분 가능한 것은 해제
- 광우병에 대한 검사강화(후생노동성 10.9발표)
 - 전국 식육위생검사소(117개소)에서 10.18부터 소 전두수에 대하여 스크리닝 검사(약 130만두)
 - 10.18일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쇠고기는 전량 BSE Free상태임을 선언
- 소의뇌, 안구, 척추등 광우병 위험부위 소각(9.27부터)
 -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頭蓋)와 척수 및 모든 소의 회장 원부위(回腸 遠部位, 맹장의 접속 부분으로부터 2m이상)는 소각
- 건강식품과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원료에 자국산 소 유래생산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10.2)
- 특정위험 부위를 포함,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 유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가공한 회사 점검지시(10.5)

<우리나라의 조치사항>

- 일본에서 광우병 의심소 발생발표(9.10)와 동시에 일본 광우병관련 품목에 대해 잠정수입검역중

단 조치(9.10)

- 식약청 및 관세청등 광우병 관련품목(HS code 680개 품목; 약품, 화장품, 사료 등)을 관리하는 관련기관에 특별관리요청(9.10)
 - 일본에서 수입되어 검역창고에서 보관중인 물품에 대한 출고보류 조치
- 일본 광우병 최종확정 발표(9.22)를 공식 확인후 광우병관련 품목의 잠정수입검역중단을 수입금지로 전환

□ 사료관련조치

- 남은 음식물사료와 동물성사료의 반추가축 사용금지 이행철저 지시(9.10, 시도, 단체 등)
- 사료협회, 생산자단체에 일본산 광우병 관련품목의 수입자제 요청(9.12)
- 사료등 수입에 관한 통합공고 긴급개정 요청(9.12, 산업자원부)
 - 일본산 반추가축 유래 단백질 등을 함유 또는 사용한 사료의 수입을 금지도록 현행 통합공고 개정 완료(9.20)
- 배합사료, 단미사료,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 일제점검(9.11~9.22) 및 특별점검(9.17~19, 8개도 4명)실시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고시 제정(10.5시행)
 - 광우병등 인체, 동물등에 대하여 질병감염의 개연성이 우려되는 사료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개최(10.6)

- 가축의 광우병뿐만 아니라 사람의 vCJD전문가로 구성하여 광우병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 및 향후대책 협의
 - 광우병 예방대책이 우려하였던 바와 달리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 앞으로 광우병 예방대책의 철저추진 및 소비자 홍보강화